

농촌진흥청 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농촌진흥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6월 25일
농촌진흥청장

1 임용예정인원 (4개 직위, 총 4명)

채용예정 직급	임용예정 기관	채용예정 인 원	직류별 채용인원	비고
농업연구사	국립농업과학원	1명	• 작 물 보 호 1명	
	국립식량과학원	1명	• 작 물 1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명	• 원 예 2명	

2 임용예정분야

기관	임용예정직급 (직류)	인원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부서 (지역)	선발 단위
국립농업 과학원	농업연구사 (작물보호)	1	친환경 잡초방제 연구	해충잡초방제과 (전북 완주)	201
국립식량 과학원	농업연구사 (작물)	1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상 토양 등 생산환경 분석·평가	작물환경과 (전북 완주)	202
국립 원예특작 과학원	농업연구사 (원예)	1	치유농업 인지·정서 분석 및 AI 활용 효과평가	도시농업과 (전북 완주)	203
국립 원예특작 과학원	농업연구사 (원예)	1	디지털육종, 특용작물 품종 육성	특용작물육종과 (충북 음성)	204

※ 하나의 선발단위만 응시 가능(중복 지원 시 모든 분야 불합격 처리)

※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 임용예정분야별 직무기술서(붙임3) 확인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균형인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 12. 31.이전 출생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6. 7. 6.)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람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 7. 27.) 기준]

임용예정직급	직위별 요건	
농업연구사 (201~204)	경력	○ 임용 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6·7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임용예정분야별 직무기술서(붙임3) 확인
	학위	○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전공: 임용예정분야별 직무기술서(붙임3) 확인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경력·학위 기준 중 해당되는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예) 학위(석사)✓ / 학위(박사) / 경력

→ **경력·학위 요건을 각각 선택하거나 학위 기준을 중복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시 부적격으로 처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서류마다 응시자격을 다르게 기재한 경우 '이력서' 기준 판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경우에는 발급일까지만 경력 인정)**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채용분야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에 한함(경력(재직)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인정 불가)**

• 개인사업자(사업주)나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교에서의 연구 경력 또는 「고등교육법」 상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

• 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하며, 보완서류는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업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연구과제참여 확인서 등) 필수 제출(①+②+③+④ 모두제출)하여야 함.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주00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증명서는 직인날인 하며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기재
- 경력기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 각종 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상 '강사'로 근무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칙에서 정한 교원의 교수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력기간 인정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직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가 가능한 경우

-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 대학 강의 경력은 주당 강의시수 포함

②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관련 직무분야 경력임을 증명해야 함
예시) 근로계약서, 연구과제참여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추가 제출(응시자 이외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5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학위) 증명서' 제출(별지 제109호서식)

※ **경력, 학위 등 응시요건에 대한 증빙서류(업무내용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학위논문 관련 증빙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시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6. 7. 6.) 기준]

임용예정직급	우대요건
농업연구사 (201~204)	-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학위 이외에 관련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 단,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학위 중복 인정 - 응시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우대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학위 이외에 관련전공 박사 학위

• '관련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학위는 서류전형 우대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와 중복적용 가능.

예) - '박사학위'를 응시요건으로 사용한 경우 박사학위는 우대요건으로 중복 인정 안 됨

- '석사학위'를 응시요건으로 사용한 경우 박사학위 우대요건으로 인정됨

- '석박사통합과정학위'를 응시요건으로 사용한 경우 박사학위 우대요건으로 인정됨

- 응시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연차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분야 근무경력(공무원경력+민간경력 통산)

• 민간경력(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을 포함(단,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주00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증명서는 직인날인 하며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기재
 - 경력기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 각종 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상 '강사'로 근무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칙에서 정한 교원의 교수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력기간 인정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직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운전면허, 한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기재 및 제출 불필요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직무기술서(붙임3) 참조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직급)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계획, 관련분야 근무경력, 학위 등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로 합격자 결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실적·자기소개 및 심층질의응답을 통해 공직관,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30분 내외)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면접시험 평정요소 및 우리 청 인재상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전문성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농촌진흥청 인재상

《 현장을 바꾸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 혁신 인재 》

소통·공감	국민, 농업인 등과 신뢰 기반 소통하는 인재
헌신·열정	포용성을 바탕으로 열정적 자세로 일하는 인재
현장·혁신	융합과 창의적 사고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책임있는 인재
전문성	농업기술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6. 25.(목) ~ 7. 6.(월)	'26. 7. 1.(수) ~ 7. 6.(월)	'26. 7. 20.(월)	'26. 7. 27.(월)	'26. 8. 10.(월)

- 시험일정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만 공고합니다.

※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응시자에게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시험 일정, 합격자 발표 공고 등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채용공고 게시판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7. 1.(수) 09:00 ~ 7. 6.(월) 18:00
- 원서 접수 및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우)5487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00직 응시원서 재증)
 -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2"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1부	
	석사이상 학위(졸업) 증명서 및 학위논문요약서 각 1부 * 응시요건을 '학위'로 하는 경우	○ 별지서식 제6호

구분	서류	비고
	근무경력 요약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응시요건을 '경력'으로 하는 경우	○ 별지서식 제7,8호
	주민등록초본 1부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졸업) 증명서 및 학위논문요약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6호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요약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7,8호
	면접시험 편의제공 신청서	○ 별지 제9호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별지 제10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 제1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제12호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선발단위별로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발단위 확인

※ 외국에서 발급한 학위(졸업)증명서, 경력(재직) 증명서 등은 반드시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라. 면접시험 편의제공 신청

- 면접시험 시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편의지원 신청서의 신청사유에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제공 필요성 등을 기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 정도를 확인 및 검토하여 편의지원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면접시험 시 확정된 내용으로 지원 예정

※ 편의지원 내용

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지체장애	전담도우미 지원
뇌병변장애	전담도우미 지원,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노트북) 제공, 면접위원과의 거리 1m 내외로 가깝게 조정
청각장애	수화통역사 지원,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노트북) 제공, 면접위원과의 거리 1m 내외로 가깝게 조정

마.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귀속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는 1개의 지원코드만 접수 가능하고 다른 지원코드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다른 지원코드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응시한 모든 지원코드에 대해 불합격 처리**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응시원서 접수 마감기한 및 취소기한 미준수,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 응시의사 철회는 임용예정기관별 담당자 이메일로 지원코드, 성명, 철회의사 등을 기재하여 보내주시고, 전자수입인지는 응시자 본인이 은행·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환매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6. 8. 10. ~ 8. 20.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2026. 9월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확정하며, 채용 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 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 책정 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개인별 호봉 책정은 임용 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통해 결정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238-0235)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필수서류를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외국에서 발급한 학위(졸업)증명서, 경력(재직) 증명서 등은 반드시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비고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별지서식 제1호)	○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	필수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미부착 시 무효처리)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응시원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필수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필수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용지 3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출생지, 부모직업, 근무기관명 등 불필요한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 출생지, 부모직업, 근무기관명 등 불필요한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6.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1부	○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서류 1종	필수

구 분	내 용	비고
7. 석사이상 학위(졸업)증명서 및 학위논문요약서 각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필수) 응시요건을 '학위'로 하는 경우 ○ (해당자에 한함) 직무기술서의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입증위한 학위증명서 제출 ○ 학위논문 요약서(별지서식 제6호) 작성 * 논문표지(제목)·발표자·지도교수, 심사위원 서명 페이지 사본 각 1부 첨부 (논문 원본 제출 불필요) ○ 해외 학위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 첨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에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서 제출 ○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졸업)예정증명서 첨부 * 면접일까지 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여야 면접 응시 가능	필수 또는 해당자에 한함
8. 관련분야 주요경력 요약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제8호) * 관련분야만 제출	○ (필수) 응시요건을 경력으로 하는 경우 ○ (해당자에 한함) 직무기술서의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 요약서(별지서식 제7호) 작성 및 경력증명서 제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주당 근무시간, 발급 담당자 성명·전화번호·Fax번호, 직인 등 반드시 포함(발급자 미포함 시 하단 별도 기재 가능)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직무분야와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기재가 불가할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연구과제참여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제출해야 함(증빙서류 제출 시 응시자 이외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 첨부	필수 또는 해당자에 한함
9.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 지원자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필수
10.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1부	○ 시험위원 선정 제척 시 사용 *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박사학위를 응시요건으로 선택한 경우 학부, 석사 졸업증명서 각 1부 제출	필수
11. 편의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9호)	○ 신청사유에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제공 필요성 기재	해당자에 한함
12. 동일계통학과(학위)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10호)	○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 중 '학위' 선택시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관련 전공'과 유사학과(학위)의 경우 제출	해당자에 한함

구 분	내 용	비고
1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 자필 서명 필수	필수
14.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2호)	○ 자필 서명 필수	필수
15. 응시수수료 면제 증빙서류 1부	○ ①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중 해당하는 증빙 서류 중 1종 ○ 해당 기관(주민센터 등) 또는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 * 해당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해당자에 한함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선발단위 구분번호	채용직무	근무예정기관(부서)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 인원
201	친환경 잡초방제 연구	국립농업과학원 해충잡초방제과	농업연구사 (작물보호)	1명
응시 자격 요건	※ 복수 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잡초방제, 친환경 잡초방제, 작물보호, 잡초과학			
	경력	○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6·7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위	○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전공: 농화학, 환경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농학, 원예학, 잡초과학 등)		
우대요건	○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학위 이외에 관련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 응시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			
담당 예정업무	세부 업무내용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		비중
	1. 제초제 사용 최적화 및 사용량 저감 기술 개발 - 제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최적 사용법 개발	■ (제초제 사용현황 분석) 현장에서 사용하는 제초제 사용량 현황을 수집하고 표준화된 형태로 DB 구축 및 관리를 통한 최적 사용법(저감 기술) 개발		50%
	2. 비화학적 잡초방제 기술 개발 및 현장 활용 - 친환경 소재활용 잡초방제 기술 개발 및 농가 활용	■ (통합관리 기술 개발) 화학적+비화학적 잡초방제 기술의 혼용 활용 등의 기술을 통한 잡초 통합관리기술 개발		50%
필요역량	○ 제초제와 비화학적 잡초방제 수단의 약효·약해 실내실험 및 잡초관리 전문 지식 ○ 잡초의 분류, 생리·생태적 표현형질 및 분자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통합적 지식 ○ 농업시험 설계, 조사 및 통계 등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한 지식			
직무특성	○ 대부분의 업무가 연구실에서 이뤄질 수 있으나 업무 특성상 연구현장(시험포장, 출장지 등)에서 수행되기도 함			
소재지 · 교통편	1. 소재지: 전북 완주군 농생명로 160. 국립농업과학원 2. 교통편 ○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 → 동김제, 이서 방면으로 우측방향(콩쥐팍쥐로) → 돌꼭지교차로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과학원 방면으로 우회전(이서남로) → 이서남로 좌측도로 진입 → 국립농업과학원 ○ 26, 165버스 이용, 국립농업과학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00m 이동(약 8분)			
편의시설	1.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구비 2. 내부시설: 승강기 및 경사로 설치 3. 위생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선발단위	채용직무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 인원
202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생산환경 분석·평가 및 데이터 구축·활용	국립식량과학원 작물환경과	농업연구사 (작물)	1명

응시요건	※ 복수 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상, 토양 등 생산환경 분석·평가			
	경력	○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6·7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위	○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전공: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관개배수학 등)		

우대요건	○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학위 이외에 관련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 응시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			
------	---	--	--	--

	세부 업무내용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	비중
담당 예정업무	1. 작물 생산환경 분석·평가 - 식량작물 생육단계별 기상, 토양 등 생산환경 분석 및 생리반응 평가	■ (데이터수집·관리) 식량작물 재배·생리 등 생육진단 지표 및 디지털 관리기술 개발	50%
	2. 기상, 토양 등 환경 데이터 구축·활용 - 기상환경, 재배양식, 토양분석 등 에서 얻어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	■ (데이터활용) 식량작물 생육단계별 생산환 경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등 활용 계획 수립·추진	50%
필요역량	○ 본부서는 식량작물의 안정생산 기술개발을 위한 기상·토양 환경 등을 분석하는 부서임 ○ 작목별 재배 특성, 생리반응, 생육특성 및 작부체계에 관한 데이터 관리 지식 ○ 작목별 재배 및 토양환경 관리 연구를 위한 AI 알고리즘 이해·활용 능력 필요 ○ 식량작물 재배·생육특성, 생리반응 등의 전문지식과 현장활용에 대한 이해		
직무특성	○ 대부분의 업무가 사무실에서 이뤄지나 업무 특성상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부서 또는 현장(시험포장)에서 수행되기도 함		
소재지· 교통편	1. 소재지: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 2. 교통편 ○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 → 동김제, 이서 방면으로 우측방향(콩쥐팍쥐로) → 돌꼭지교차로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과학원 방면으로 우회전(이서남로) → 식량과학원 방면으로 좌회전 (이서남로) → 국립식량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방면으로 우회전 (농생명로) → 회전교차로에서 국립식량과학원 방면으로 9시방향(좌회전) → 국립식량과학원 도착 ○ 200(시외버스터미널 동부대로전주역)번 버스 이용 혁신이노힐스아파트 하차 후 도보 1.4km 이동(15분)		
편의시설	1.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구비 2. 내부시설: 승강기 및 경사로 설치 3. 위생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선발단위 구분번호	채용직무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 인원
203	AI 활용 치유농업 효과평가 연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농업연구사 (원예)	1명

응시 자격 요건	※ 복수 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치유농업 인지·정서 분석 및 AI 활용 효과평가			
	경력	○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6·7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위	○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전공: 컴퓨터공학, 인지심리학, 통계학, 원예학, 농학, 작물학 등)		

우대요건	○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학위 이외에 관련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 응시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			
------	---	--	--	--

	세부 업무내용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	비중
담당 예정업무	1. 치유농업 인지·정서 분석 -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인지·정서 데이터 수집방법 개발 등 빅데이터 수집 및 통합 DB 구축	■ (데이터수집·관리) 시험연구과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생체정보, 인지·정서 데이터 등)를 수집하고 표준화된 형태로 DB 구축 및 관리	50%
	2. 치유농업 AI 활용 효과평가 - 치유농업 생체정보, 인지·정서 정보 데이터의 AI활용 분석방법 개발	■ (데이터분석·활용) 치유농업 생체+인지·정서 데이터 통합분석을 위한 다양한 통계 분석, 머신러닝 등 AI 분석 및 시각화	50%
필요역량	○ 인지·정서 평가 도구(설문, 심리검사)의 원리, 활용, 통계분석에 대한 지식·경험 * 인지심리학, 뇌과학, 통계학, 심리학적 연구 방법론 등 인지·정서분석 관련 학문 지식·경험 ○ 빅데이터 분석 및 DB 구축에 대한 지식·경험(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데이터 마이닝 등)		
직무특성	○ 대부분의 업무가 사무실·실험실에서 이루어지며 업무 특성상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업무가 수반됨		
소재지· 교통편	1. 소재지: 전북 완주군 농생명로 10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 교통편 ○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 → 동김제, 이서 방면으로 우측방향(공주팔취로) → 돌꼭지교차로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과학원 방면으로 우회전(이서남로) → 식량과학원 방면으로 좌회전(이서남로)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예특작과학원 방면으로 좌회전(농생명로)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26, 27, 165버스 이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300m 이동(약 5분)		
편의시설	1.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구비 2. 내부시설: 승강기 및 경사로 설치 3. 위생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선발단위	채용직무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 인원
204	특용작물 디지털육종 데이터 구축 및 내재해 검정체계 고도화 연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육종과	농업연구사 (원예)	1명

응시요건	※ 복수 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디지털육종, 특용작물 품종 육성			
	경력	○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6·7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위	○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전공: 원예학, 농학, 생물학, 식물학, 생물정보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식물육종학, 작물육종학, 식물유전학 등)		

우대요건	○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학위 이외에 관련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 응시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			
------	---	--	--	--

	세부 업무내용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	비중
담당 예정업무	1. 특용작물 R&D 빅데이터 수집·활용 - 특용작물 표현형 정보(이미지 등), 유전체 대사체 정보를 통합하여 빅데이터 연관 분석, AI 기반 예측 모델 개발	■ (데이터수집·활용) 특용작물 R&D 빅데이 터 활용을 위한 통계 분석·분석 결과 의 시각화 및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	50%
	2. 특용작물 내재해 검정체계 고도화 - 환경·표현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생물 스트레스 및 생물 스트레스 관련 검정 지표를 발굴하고, 우량계통 선발에 적용	■ (검정체계) 특용작물 R&D 데이터를 활용한 내재해·내병성 검정체계를 개발 하고 유전자원 및 계통의 평가에 적용 하여 우량계통을 선발하는 업무	50%
필요역량	○ 유전체, 전사체 등 오믹스 데이터에 대한 분석·활용 능력 ○ 생산된 데이터 표준화·정리 및 기초 연관분석에 필요한 AI 활용 능력 ○ 작물의 육종체계, 생리생태 등에 대한 기본 이해와 연구자료 해석 능력		
직무특성	○ 대부분의 업무가 사무실·실험실에서 이루어지며 업무 특성상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업무가 수반됨		
소재지· 교통편	1. 소재지: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로 9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2. 교통편 ○ 영동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충주 IC → 주덕방향진출 → 청주(음성방향) → 소이면 삼거리(좌회전) ○ 중부고속도로 → 음성 IC → 충주·음성방면 → 무극교차로 음성방면 → 음성교차로 충주·주덕방면 → 소이면 삼거리(좌회전) ○ 중부고속도로 → 증평 IC → 증평경유 음성방향 → 화성교차로 충주방향 → 소이면 삼거리(우회전)		
편의시설	1.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구비 2. 내부시설: 승강기 및 경사로 설치 3. 위생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